

IFRS Brief

IFRS Newsletter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7년 3 · 4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1
I. [개정] IFRS 2 '주식기준보상 거래의 분류와 측정'	
II. [개정] IFRS 4 '보험계약' "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	
III. [개정] IAS 40 '투자부동산' "Transfers of Investment Property"	
IV. 연차개선 2014-2016	
V. [공개초안] 연차개선 2015-2017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상황	10
I. 보험계약	
II. 개념체계	
III.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Global 동향	14
I. 2017년 1월과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FRS 실무적용 해설	16
K-IFRS 9 '금융상품' - 분류와 측정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회(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개정] IFRS 2 '주식기준보상 거래의 분류와 측정'

IASB는 2016년 12월, IFRS 2 '주식기준보상'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실무에서 다양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었던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

기존 IFRS 2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측정할 때에는 공정가치 측정에 고려할 조건과 수량에 반영할 조건을 명시하였으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만을 요구하여, 실무에서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을 적용하거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유사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개정 기준에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매 보고기간 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하되, 시장조건인 성과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공정가치 측정에 고려하고 용역제공조건과 비시장 성과조건은 수량에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실무 회계처리의 다양성이 해소될 것이다.

순결제특성을 가진 주식기준보상

어떤 국가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결제하는 기업이 종업원이 납부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즉, 원천징수). 기업은 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할 지분상품 중 세금 상당액을 유보한 후의 순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에 명시할 수 있다(순결제특성). 이 경우에 기업이 원천징수하는 주식기준보상 부분을 주식결제형으로 분류 해야 하는지 현금결제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를 위한 순결제특성이 있으나, 이 규정이 없었다면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되었을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전체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법규가 없으나 순액을 결제하는 경우
-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를 한 지분상품. 이 부분은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때에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

주식기준보상의 조건변경(현금결제형 → 주식결제형)

기존 IFRS 2에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으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주식결제형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을 변경하여 주식결제형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조건변경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정도까지 자본으로 인식
- 조건변경일 현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부채는 제거
-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일 현재 인식한 자본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II. [개정] IFRS 4 ‘보험계약’ “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

새로운 보험기준서 IFRS 17(시행일: 2021년 1월 1일)이 적용되기 전에 금융상품 기준서 IFRS 9(시행일: 2018년 1월 1일)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회계불일치와 당기손익의 변동성¹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두 가지 주요 기준서가 시행됨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유의적인 원가와 노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IASB는 현행 IFRS 4를 개정하여 다음의 두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¹ 현행 IFRS 4에서는 보험부채의 원가법을 인정한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는 상각후원가나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을 분류·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IFRS 9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측정한다면 상각후원가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측정되던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산-부채가 대응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기준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현행가치로 평가하므로 IFRS 9과 함께 적용 시 회계불일치 및 당기손익 변동성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

1. IFRS 9에 대한 한시적 적용 면제

기업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2021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까지 IFRS 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한 규정이다.

적용요건

보고실체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계속 IAS 39를 적용할 수 있음).

- 과거에 IFRS 9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 2016년 4월 1일 직전의 연차보고일 또는 종전에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보고실체인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전 후속 연차보고일에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 (predominantly) 보험과 관련되어 있음

예를 들면, 12월 말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에 한시적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2월 31일에 보고실체가 한시적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재평가 할 수 있음

보험자의 활동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 보험계약에서 분리된 저축요소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한 부채²의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과 비교할 때 유의적이고
-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과 비교한 보험 관련 부채²의 총장부금액의 비율이
 - i. 90%를 초과하거나
 - ii. 90% 이하이지만 80%를 초과하면서 보험자가 보험과 관련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음

각각의 보고실체수준에서 평가

이러한 평가는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각각의 보고실체 수준에서 수행하므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실체의 입장에서 각각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 P는 대부분의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A사와 은행B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대부분이 활동이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2 보험계약으로 인한 부채는 보험계약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부채로서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순 계약의무를 의미한다. 반면, 보험 관련 부채는 다음의 부채로 구성된다.

- ① IFRS 4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부채
- ② IAS 39를 적용할 때 당기손익인식항목인 비파생 투자계약부채
- ③ ①과 ②때문이거나 의무이행을 위해 발생하는 부채(예 :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등)

P사는 금융지주회사 이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는 IFRS 9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보험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IAS 39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A사는 개별 재무제표에서 IAS 39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B은행은 개별재무제표에서 IFRS 9을 적용하여야 한다. 최초 평가 이후, 보고실체의 활동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활동이 여전히 대부분 보험과 관련 있는지를 재평가한다.

지분법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

한편, IAS 28 문단 35~36에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회계정책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 기간에 대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보고실체와 다르게 IAS 39(또는 IFRS 9)을 적용한다면 그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요 공시사항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한 보험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 보험자가 한시적 면제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 IFRS 9을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SPPI test를 통과하는 금융자산과 그렇지 않은 금융자산)

2. 당기손익조정접근법(The Overlay approach)

IFRS 9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발행자의 모든 적격한 금융자산의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처음 IFRS 9을 적용할 때에만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후속적으로는 적격한 금융자산이 최초로 인식될 때 혹은 종전에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 금융자산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IAS 39을 적용할 때의 장부금액과 IFRS 9을 적용할 때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당기손익조정액)를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적격한 금융자산에 대해 IAS 39을 적용했다면 보고했을 당기손익과 동일한 당기 손익을 보고하게 된다.

적용요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 IFRS 9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IAS 39을 적용했다면 전체가 당기 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지 않음³

³ 이러한 금융상품의 예 : IAS 39를 적용했다면 원가로 측정되지만 IFRS 9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되는 금융상품(예 : 비상장주식)이나 IAS 39를 적용했다면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이 분리되지만 IFRS 9에서는 전체가 공정가치-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복합금융상품(예 : 전환사채)

- IFRS 4 보험계약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어야 함

중단

이 방법은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개별 금융상품별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금융자산이 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매 회계연도 초에 중단할 수 있다. 당기손익조정 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모든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보험자는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액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모두에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주요 공시사항

-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했다는 사실과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의 분류별 보고 기간 말 장부금액
-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지정한 근거
- 보고기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한 총 금액을 도출한 방법을 설명하고 재분류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 보고기간 동안 보험자가 금융자산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그 영향

경과규정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IFRS 9으로 전환 시 지정된 금융자산에 소급하여 이 방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조정한다.



III. [개정] IAS 40 ‘투자부동산’ “Transfers of Investment Property”

IASB는 2016년 12월, IAS40 문단 574에 열거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실무적용의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다.

개정 기준은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에서 혹은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하였다.

-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음
- 기준에 문단 57 (1)~(4)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입증되는 상황은 용도변경의 증거가 되는 상황을 망라하는 목록이 아닌 예시를 열거한 것임을 명확히 함
- 용도 변경은 완성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에도 적용됨

경과규정

개정안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최초 적용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용도 변경에 적용하며, 최초 적용일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다시 판단하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부동산을 재분류한다.

최초 적용일에 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용도 변경 일은 최초 적용일로 본다.
- 보유 중인 부동산을 재분류 함에 따라 당기손익이 인식되는 경우 이 금액은 모두 최초 적용 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 최초 적용 일에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 되거나 투자부동산에서 재분류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 변동 내용의 일부로 그 재분류 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단, 사후판단 없이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다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IV. 연차개선 2014–2016

IASB는 연차개선 2014–2016 Cycle의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이번 연차개선은 IFRS 1 ‘국제회계 기준 최초채택’, IFRS 12 ‘타 기업지분에 대한 공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를 개정하였다.

4 IAS 40.57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한다.

- (1)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 (2)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 (3)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 (4)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IFRS 12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해당하는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IFRS 12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해당하는 타 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IFRS 12 문단B17 '요약재무제표 공시 의무 면제 규정'을 제외하고는 IFRS 12에 따라 공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 한다.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현행 IAS 28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과 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중 선택 할 수 있는 규정이 회사가 보유한 모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분법과 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IAS 28 문단 36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단 36A에서는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기준에서는 이러한 문단 36A의 규정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선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최초 인식되는 시점
-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지배회사가 되는 시점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 한다. 조기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적용 사실을 공시한다.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IFRS 1에서 허용한 단기 면제 규정 중 기한 경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일부 문단(E3-E7)을 삭제하였으며,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V. [공개초안] 연차개선 2015-2017

IASB는 2017년 1월, 연차개선 2015-2017 Cycle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IAS 12 '법인세', IAS 23 '차입원가',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번 공개초안에 대해 2017년 4월 12일까지 외부 검토의견을 받는다.

IAS 12 '법인세' -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액의 법인세효과

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IAS 32 '금융상품 : 표시'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였지만, 이 지분상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배금액은 재무제표에서는 자본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예 : 국내 신종자본증권과 그 이자). 이때 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한 IAS 12 문단 52B⁵ 요구사항이 IAS 12 문단 52A에서 언급하는 분배된 이익과 미배당이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분배에 적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공개초안에서는 문단 52A상황에서만 아닌 모든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대해 52B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세효과의 계산방법(배당이익과 미배당이익에 대한 다른 세율의 적용)보다는 배당 가능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거래나 사건이 인식된 항목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IAS 12 문단 52A의 상황에서만 IAS 12 문단 52B의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단 52B의 요구사항을 문단 58A로 변경하고 "문단52A의 상황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제안하였다.

한편, IASB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지급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그러한 지급이 이익의 분배로서의 지급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만일 이익의 분배로서의 지급이 아니라면 해당 분배의 법인세효과에 대해서는 IAS 12 문단 61A에서 언급하는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자본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 이익의 분배로서의 지급인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지침은 IAS 12의 개정범위를 넘어서는 이슈이므로 IAS 12의 개정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IAS 23 '차입원가' - 자본화가능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일반 목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자본화 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한다. 대신에,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특정 목적 차입금에 관련된 적격자산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 문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는 IASB의 의도와 다른 것이므로, 공개초안에서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5 문단 52A의 상황에서 배당의 세효과는 배당지급에 대한 부채가 인식될 때 인식한다. 배당의 세효과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문단58(a)와 58(b)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효과를 제외하고, 문단 58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IAS 28 문단 38에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IAS 28이 적용되는 투자지분은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IASB는 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측정 시에 IFRS 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IAS 28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며 두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혼합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IAS 28에서는 지분법 손실이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에 손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 외에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측정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IAS 28의 문단 14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지분만 IFRS 9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IASB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은 IFRS 9의 적용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고, IAS 28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히 나타낼 것을 제안하였다.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7년 1, 2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상황	진행계획	
		6개월 내	6개월 이후
기준서 등			
보험계약	기준서 초안 작성중	기준서 발행	
개념체계	분석 중		개념체계 발행
공시개선 - 중요성 실무서	실무서 작성 중	실무서 발행	
공개초안			
공시개선 - 중요성의 정의	공개초안 작성 중	공개초안 발행	
토론서			
요율규제	분석 중		토론서 발행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	토론서 초안 작성 중	토론서 발행	
주요재무제표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분석 중		토론서 발행
동적 위험관리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영업권과 손상	분석 중		프로젝트의 방향 결정
할인율	분석 중	연구 결과 요약 발표	
주식기준보상	초안 작성 중	연구 결과 요약 발표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1, 2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보험계약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변경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비금융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추정의 모든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 마진에서 조정함
- 변동가능 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기초항목과 관련이 없고 비금융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추정의 모든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 마진에서 조정함
- 계약상 서비스 마진에서 조정되는 추정의 변경은 경험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변동을 포함함
- 경험조정의 정의는 예상보험금 및 비용과 실제보험금 및 비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험조정에서 투자요소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함
- 매 기간 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금액은 매 기간 초에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장부금액에서 모든 다른 조정을 한 후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장부금액을 보장단위에 배분함으로써 결정함

보험계약 중 감독규정에 의해 가격 산정이 영향을 받는 집합에 대한 좁은 범위의 면제규정

보험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나 급부 수준을 다르게 결정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능력에 대해 법률이나 감독규정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집합으로 그룹핑되는 경우에는, 집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집합에 포함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II. 개념체계

IASB는 2015년 5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중 '측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최초 측정과 관련된 요소

IASB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측정기준의 대분류로 역사적원가와 현행가치를 제시하고 측정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 가치가 유사한 항목간의 교환에서는
 -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채를 발생시킨다면, 자산과 부채는 같은 금액으로 인식함
 -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되면서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교환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이 그 거래에서 손익이 발생하는지를 결정함
 - 최초 인식 시 원가는 거래원가가 중요하지 않다면 통상 그 날의 공정가치와 유사함. 그러나 최초 인식 시 측정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적으로 사용될 측정기준을 최초 측정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경우에 따라 교환되는 항목의 최초 측정금액이 다른 항목의 간주원가로 사용될 수 있음

- 가치가 다른 항목간의 교환에서는
 - 취득한 자산과 발생한 부채를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면 거래의 손익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음
 - 대가 없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키는 경우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므로, 자산과 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고 차이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 측정과 관련된 요소의 공개초안의 논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가치가 유사한 항목의 교환'이라는 표현을 '시장거래(market transactions)'와 같은 대체적인 표현으로 사용
- 최초 측정은 '가치가 유사한 항목의 교환' 거래에서만 논의되어야 하는지 여부
- 지분상품 보유자와의 거래의 논의에서 지분상품 보유자에게 분배함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상황을 서술해야 하는지 여부

IASB는 또한 공개초안에 있는 '자가건설자산'에 대한 논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 이상의 측정 기준

IASB는 개념체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잠정 결정하였다.

-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시함
-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에는 목적적합성과 정보의 충실한 표현을 모두 고려해야 함

III.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계약상 조건

IASB는 Gamma approach⁶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IASB는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자본·부채 분류 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잠정적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Gamma approach를 적용하여 부채와 자본을 분류할 때, IAS 32 '금융상품 : 표시' 및 IFRS 9 '금융상품'과 일관되도록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의 계약상 조건만을 고려하도록 함

⁶ Gamma approach는 부채와 자본 구분 시, 요구되는 결제 시점 및 결제 금액 모두를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Gamma approach에서는 청산 전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거나,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독립적인 금액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 부채로 분류한다. 이외의 모든 나머지 청구권(claim)은 자본으로 분류한다.

- ‘의무공개매수제도⁷⁾’의 회계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어떠한 절차를 취할지 고려함
- IFRS 해석서 2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이슈사항도 인지되지 않았으므로 재고려하지 않음

자본 내 회계처리

IASB는 Gamma approach가 자본 내 회계처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용 지침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IAS 32 ‘금융상품 : 표시’ 적용 시 실무 상 이슈가 있었던 금융상품(ex.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발행 Put option)을 예시로 하여 Gamma approach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복합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 요소 분류
- 상환의무 요구사항과 자본 내 회계처리
-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 인식
- 파생지분상품에 대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배분(attribution)
- 자본 내 결제 결과의 회계처리. 기업이 (i)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이전하여 결제, (ii)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결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설명



⁷⁾ Mandatory tender offers, 다른 기업의 일정 지분(eg. 25%) 이상을 매수하고자 할 때, 특정 지분(eg. 50%+1주)까지 공개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IFRS 해석위원회에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에서 논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은 관련 제도가 과거에 폐지되었다.

I. 2017년 1월과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7년 1월과 2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9] 대칭적 중도상환옵션이 있는 금융자산의 SPPI 적용

대칭적 중도상환옵션은 차입자가 계약상 잔여 미래현금흐름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상환할 수 있고, 공정가치 중도상환옵션은 채무상품의 중도상환시점 현재의 공정가치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중도상환금액이 잔여 원리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IFRS 9 문단 B4.1.11(B)에 따라 대칭적 중도상환옵션이나 공정가치 중도상환옵션이 있는 경우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즉, SPPI 요건을 충족 못함). 그러나 IASB는 실무상 중도상환옵션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이 사업모형 조건⁸을 충족한다면 대칭적인 중도상환 옵션을 가진 금융상품을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IFRS 9의 좁은 범위의 개정을 제안함
 - i. 금융자산이 대칭적인 중도상환옵션의 특성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IFRS 9 문단 B4.1.11(b)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 ii.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대칭적인 중도상환옵션특성의 공정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개정사항을 IFRS 9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시행일을 그 후로 하거나 조기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함
- 제안된 개정사항은 소급적용을 요구함

2. [IFRS 9]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혹은 교환

2016년 11월에 해석위원회는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융부채가 교환되었지만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해석위원회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어 발생한 조정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IFRS 9.B5.4.6의 요구사항은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융부채가 교환되어 현금흐름의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현금흐름의 추정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FRS 9.5.4.3의 요구사항 및 IFRS 9.Appendix A의 상각후원가의 정의와도 일관된다고 판단하였다.

⁸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이거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인 경우

⁹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IFRS 9.B5.4.6을 적용할 때에는 조건이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부채의 최초 유효 이자율로 할인하여 재계산해야 하고,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에 대한 이러한 조정금액은 조건 변경일이나 교환일에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IASB는 상기와 같이 해석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금융부채의 조건변경과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을 개발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IASB는 해석위원회의 결론에는 동의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해석서 초안을 발표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IASB는 IFRS 9의 원칙과 요구사항들이 기업들이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나 교환을 적절하게 회계처리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서 초안은 IFRS 9에서 이미 요구하고 있는 회계처리를 강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기준서를 발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관련된 회계 처리를 강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IFRS 실무적용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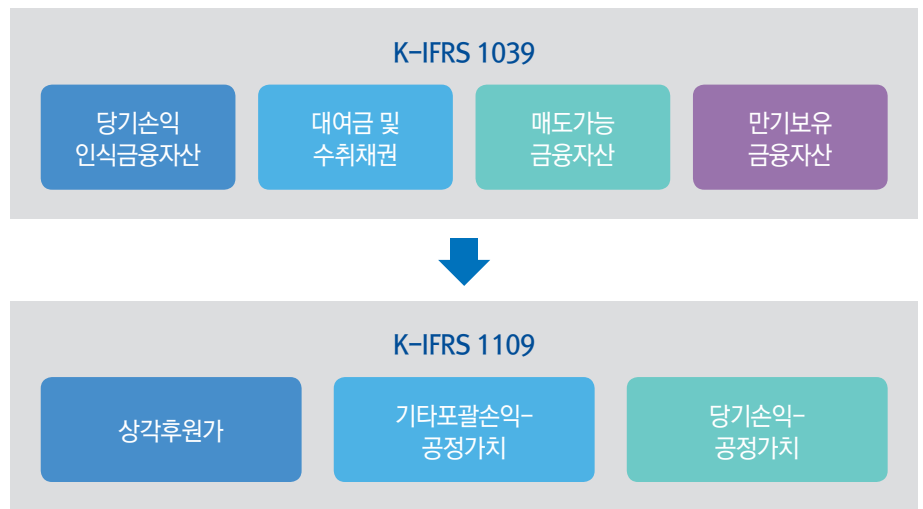
〈실무적용이슈 No.55〉

K-IFRS 9 ‘금융상품’ - 분류와 측정

K-IFRS 1109 ‘금융상품’은 2018년부터 적용되며, 현재 시행 중인 K-IFRS 10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만을 대체한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K-IFRS 1109의 시행 이후에도 금융상품의 표시사항을 규정하는 K-IFRS 1032와 금융상품 관련 공시사항을 다루는 K-IFRS 1107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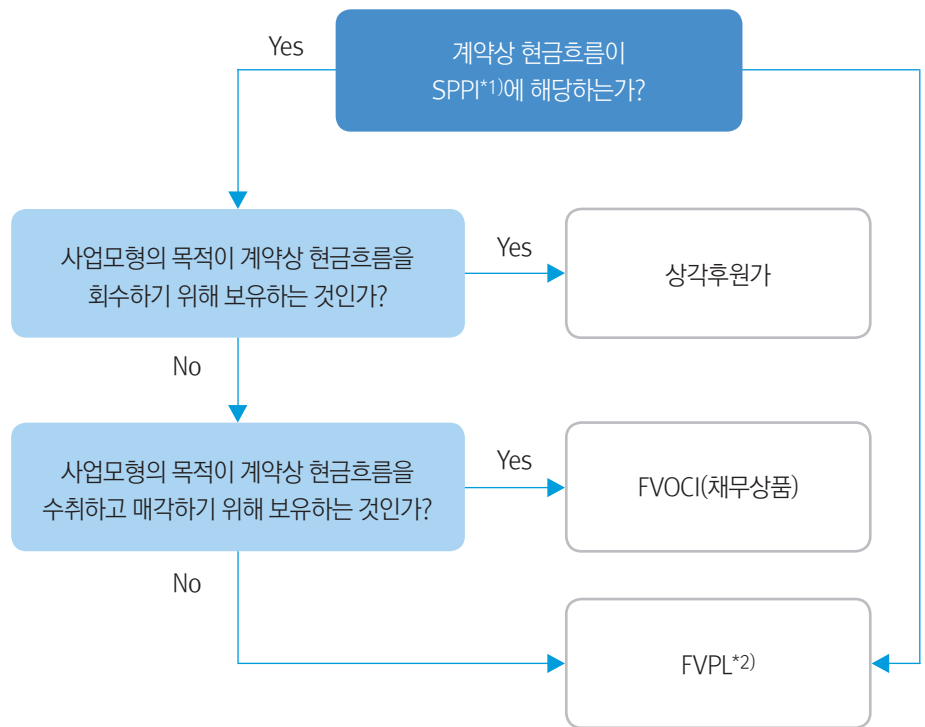
K-IFRS 1109는 금융자산의 분류를 단순화하고자 하였으며, 금융자산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측정 방식으로 분류한다.



분류기준의 변화

K-IFRS 1039에서는 금융상품을 보유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마다 측정기준을 따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K-IFRS 1109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해당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에 근거하여 측정방법이 결정되는데, 그 측정방법이 곧 금융상품의 분류가 된다. 금융자산에 허용되는 측정방법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이하 FVOCI)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이하 FVPL)로 K-IFRS 1039와 유사하지만 측정방법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분류 기준은 상이하다.

K-IFRS 1109에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해당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목적인지, 매각할 목적인지 등에 따라 분류 및 측정방법이 달라진다.



*1) SPPI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_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으로만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으로 구성된 금융상품

*2) 지분상품의 경우 FVOCI 선택 가능

SPPI Criterion

SPPI 요건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오직 원금과 이자만으로 이루어져있는지(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f outstanding) 판단하는 기준이다.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므로, 채무상품의 측정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Test라 할 수 있다.

K-IFRS 1109에서 언급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고, 현재의 보유자 관점에서 금융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므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다를 수 있다.
-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특정 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고, 기본적인 대위위험(유동성위험), 관리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사업모형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SPPI 요건을 충족한 채무상품이더라도 즉,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의 사업모형인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인지 등에 따라 금융자산의 측정방법이 달라진다.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사업모형은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조건은 금융상품별 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기업은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모형의 분류가 보고실체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다.

SPPI 요건과 사업모형을 지분상품, 채무상품 및 파생상품 등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분상품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금융상품의 구분 별로 K-IFRS 1109의 분류원칙을 적용해보면, 우선 지분상품¹⁰의 현금흐름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FVPL로 분류된다. 다만 지분상품은 단기 매매목적이 아니라면 FVOCI로 분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FVOCI 선택은 후속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후속측정으로 인식된 평가손익(OCI)은 매각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OCI)이 금융자산 처분 시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현행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채무상품

일반적으로 채무상품은 SPPI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계약별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SPPI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FVOCI로 분류된다. FVOCI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의 경우 평가로 인한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제거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만, 이자수익, 기대신용손실 및 외화환산손익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FVOCI로 분류하는 것이 관련된 금융부채와의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킨다면,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금융자산을 FVPL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후속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¹¹ 예를 들어 사채를 공모발행하여 대여하였고, 해당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이 사채는 정기적으로 매매하지만 대여금은 거의 매매하지 않는다면, 대여금과 사채를 모두 FVPL 측정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목을 모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사채의 매매입 시점마다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를 제거할 수 있다.

10 지분상품은 K-IFRS 1032와 동일하게 정의된다. 따라서, 투자자산의 보유자는 해당 투자자산이 발행자의 관점에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11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즉,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부채를 FVPL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FVPL로 측정하고, 이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인식과 측정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파생상품과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FVPL로 분류된다. K-IFRS 1039와 달리 복합금융상품인 금융자산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SPPI 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금융부채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해서 K-IFRS 1109는 K-IFRS 1039의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FVPL로 지정된 금융부채에 대한 손익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OCI로 표시하고 다른 공정가치 변동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주요영향

금융자산을 적절히 분류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 사업모형의 분류
-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상 요소들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 매출채권을 유동화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출채권이 포함되는 사업모형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판단에 따라 매출채권이 상각후원가가 아니라 FVOCI 또는 FVPL로 분류될 수도 있다.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이사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이지원 S.Manager

T. (02)2112-7625

E. jeewonlee@kr.kpmg.com

한상현 S.Manager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응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

양유정 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국민경 S.Senior

T. (02)2112-6601

E. mkook1@kr.kpmg.com

kpmg.com/kr